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(노세영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79

발의연월일: 2021. 6.3.

발 의 자: 노세영, 김지근, 문희성,

이명녀, 박채연, 권태호,

안영호

1. 제정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비치장소(안 제3조)
- 교육지원 및 홍보(안 제4조~제5조)
- 예산지원(안 제6조)

3. 근거법규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4조
-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제2조
-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제2조
- 「의료법」제3조
- 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제2호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제4호
- 「건축법 시행령」제2조제17호가목

4. 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참고사항

○ 조례안예고 : 2021. 6. 24. ~ 7. 1.

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4조에 따라 화재로 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방연마스크"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.
 - 2. "안전교육"이란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.
- 제3조(비치장소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(이하 "구"라 한다)과 소속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표시부착을 하여야한다.
-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표지 부착을 권장 할 수 있다.
- 1.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. 단, 구청은 제외 한다
- 2. 「의료법」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
- 3. 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

- 4 (제237회-복지건설위제2차부록)
- 4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- 5. 「건축법 시행령」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시설
- 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- 제4조(교육지원) 구청장은 화재 관련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도 록 지원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실시할 수 있다.
- 제5조(홍보)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홍보와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.
- 제6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근 거 법 규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-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와 시(「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안전교육"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 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.
- 2. "안전교육 전문인력"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

6 (제237회-복지건설위제2차부록)

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.

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

- 제2조(적용 범위)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.
- 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- 2. 국공립학교
-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- 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
- 5.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

「의료법」

- 제3조(의료기관) ①이 법에서 "의료기관"이란 의료인이 공중(公衆)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·조산의 업(이하 "의료업"이라 한다)을 하는 곳을 말 한다.
-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- 1. 의원급 의료기관: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- 가. 의원
- 나. 치과의원
- 다. 한의워

- 2. 조산원: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·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.
- 3. 병원급 의료기관: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- 가. 병원
- 나. 치과병원
- 다. 한방병원
- 라. 요양병원(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 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- 마. 정신병원
- 바. 종합병원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「영유아보육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영유아"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- 2. "보육"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
- 3. "어린이집"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.

- 8 (제237회-복지건설위제2차부록)
- 4. "보호자"란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- 5. "보육교직원"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

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사회복지사업"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- 나. 「아동복지법」
- 다. 「노인복지법」
- 라. 「장애인복지법」
- 마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- 바. 「영유아보육법」
- 사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- 아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자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- 차. 「입양특례법」
- 카.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
- 타.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
- 파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- 하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- 거. 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」
- 너.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- 더. 「의료급여법」
- 러. 「기초연금법」
- 머. 「긴급복지지원법」
- 버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- 서. 「장애인연금법」
- 어.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저.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처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
- 커.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
- 터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퍼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- 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
- 2. "지역사회복지"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.
- 3. "사회복지법인"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
- 4. "사회복지시설"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
- 5. "사회복지관"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 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6. "사회복지서비스"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- 7. "보건의료서비스"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「건축법 시행령」
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신축"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(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)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(築造)하는 것[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, 개축(改築) 또는 재축(再築)하는 것은 제외한다]을 말한다.
- 2. "증축"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, 연면적,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.
- 3. "개축"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[내력벽·기둥·보·지붕틀(제16호 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) 중 셋 이상

- 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]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재축"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(災害)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.
- 가.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
- 나. 동(棟)수,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- 1) 동수,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
- 2) 동수,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, 층수 및 높이가 「건축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, 이 영 또는 건축조례 (이하"법령등"이라 한다)에 모두 적합할 것
- 5. "이전"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.
- 6. "내수재료(耐水材料)"란 인조석·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.
- 7. "내화구조(耐火構造)"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.
- 8. "방화구조(防火構造)"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.
- 9. "난연재료(難燃材料)"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.
- 10. "불연재료(不燃材料)"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.
- 11. "준불연재료"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

- 12 (제237회-복지건설위제2차부록)
 - 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.
- 12. "부속건축물"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.
- 13. "부속용도"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.
- 가. 건축물의 설비, 대피, 위생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
- 나. 사무, 작업, 집회, 물품저장, 주차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
- 다. 구내식당·직장어린이집·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, 구내소각시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.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(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)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- 1)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
- 2)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
- 3) 다류(茶類)를 조리・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
- 라.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,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용도
- 14. "발코니"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(附加的)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.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・침실・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수 있다.

- 15. "초고층 건축물"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.
- 15의2. "준초고층 건축물"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.
- 16. "한옥"이란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.
- 17. "다중이용 건축물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- 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
- 1) 문화 및 집회시설(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)
- 2) 종교시설
- 3) 판매시설
- 4)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
- 5)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
- 6)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
- 나. 16층 이상인 건축물
- 17의2. "준다중이용 건축물"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.
- 가. 문화 및 집회시설(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)
- 나. 종교시설
- 다. 판매시설

- 14 (제237회-복지건설위제2차부록)
- 라.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
- 마.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
- 바. 교육연구시설
- 사. 노유자시설
- 아. 운동시설
- 자.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
- 차. 위락시설
- 카. 관광 휴게시설
- 타. 장례시설
- 18. "특수구조 건축물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- 가.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(支持)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·차양 등이 외벽(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)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 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
- 나.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(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,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
- 다. 특수한 설계·시공·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
- 19.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"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"이란 급기(給氣) 및 배기(排氣)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(開口部)인 환기구를 말한다.